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상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48

발의연월일: 2025. 6. 12.

발 의 자:이상휘·최은석·정동만

이헌승 • 이달희 • 김태호

박준태 · 최수진 · 윤영석

김장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, 고궁·공원 등의 시설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음.

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이 월 42만원에 불과하여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지급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 또한,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고궁·공원 등의 시설을 할인이 아니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1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, 고궁·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7항 및 제10조 등).

법률 제 호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7항 중 "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"를 "지급액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(이하 "기준 중위소득"이라 한다)으로서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이상으로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참전명예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, 지급방법, 그 밖에 지급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조의2제2항 중 "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(이하 "기준 중위소득"이라 한다)"을 "기준 중위소득"으로 한다.

제10조 중 "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"를 "이용하게 할 수 있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참전명예수당) ① ~ ⑥	제6조(참전명예수당) ① ~ ⑥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(月額)	⑦
으로 지급하며, 그 <u>지급액 등은</u>	지급액은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
	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
	득(이하 "기준 중위소득"이라
	한다)으로서 1인 가구에 해당
	하는 기준 중위소득 이상으로
	<u>한다</u> .
<u><신 설></u>	⑧ 참전명예수당의 구체적인
	지급액, 지급방법, 그 밖에 지
	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
	으로 정한다.
제6조의2(권리의 보호) ① (생	제6조의2(권리의 보호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제6조제5항에 따라 입금된	②
월 참전명예수당 중 <u>「국민기</u>	기준 중위
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	<u>소득</u>
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(이하	
"기준 중위소득"이라 한다) 등	
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	
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	

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.

③ (생 략)

제10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·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3	(현	행고	- 같음	-)			
제10	조(3	고궁	등의	이용	-지원	<u> </u>) –	
 }-				<u>0</u>]-	용하.	<u>게</u>	<u>할</u>
至	있	<u>†</u> .					